

제1주제 / 언론중재위원회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책임범위

여 상 원

(서울제1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뉴스서비스사업자¹⁾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책임범위

여 상 원

(서울제1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 머리말

당초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370호 2005. 1. 27 제정, 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만 한다)은 “기사제공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어 2009. 8. 7.부터 시행된 신 언론중재법에서는 나아가 “기사제공언론사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포털²⁾이 기사제공언론사³⁾와 뉴스공급계약을 맺고 기사제공언론사로부터 받은 뉴스 등 기사를 포털에 게시하거나 포털에서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기사제공언론사의 해당 기사로 연결되게 하거나 포털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사를 불러내어 포털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사제공언론사 자체의 뉴스 제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농

1) 신 언론중재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포털(portal)은 사전적 의미로는 현관문을 뜻하는데 인터넷에서는 인터넷을 시작하는 문이라는 뜻을 가진다. 포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원래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검색기능을 넘어 포털 자체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포털로는 네이버와 다음이 있다. 포털 사이트(portal site) 또는 웹 포털(web portal)은 월드 와이드 웹(www)에서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거쳐 가도록 만들어진 사이트를 말한다. 한편, 위키백과사전에서는 포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들은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 또는 그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초기에는 검색 서비스 위주였으나 점차적으로 전자 메일, 홈쇼핑, 블로그 등 다양한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다음, 야후!는 포털 사이트의 대표적인 예이다. 포털 사이트는 수평 포털과 수직 포털로 분류할 수 있다. 수평 포털은 야후!처럼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수직 포털은 특정 영역에 치중한다.” 2007. 말 현재 국내에는 27개 사이트가 운영 중이며 일일 평균 방문자 수가 30만 명 이상인 사이트도 19개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현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09. 1.))

3) 신 언론중재법 제2조는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후하고 이에 대한 구제가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이 개정된 것이다.⁴⁾

생각건대, 뉴스서비스사업자를 규율하고자 하는 신 언론중재법의 입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이에 관하여 제17조의 2⁵⁾의 조문 하나만 됴으로써 이론상, 실무상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어 신 언론중재법에 대한 검토와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까지 신 언론중재법 중 이 부분을 운용하는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현행 민사소송법의 원리 등을 동원하여 그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2.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절차법상의 지위

가. 뉴스서비스사업자나 기사제공언론사 모두 종전 규정대로 각별로 제기된 정정보도 등 청구에 의하여 별개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데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즉, 신청인은 새로운 언론중재법 하에서도 뉴스서비스사업자나 기사제공언론사 모두 또는 각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⁶⁾

나. 뉴스서비스사업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경우 기사제공언론사의 언론중재법상의 지위⁷⁾

그런데 신 언론중재법은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기사제공언론사에

4) 신 언론중재법안에 대한 위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포털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된 이유를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언론 등에 따른 피해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터넷 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며”라고 설명하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인터넷 포털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네이버나 다음의 경우 일일 평균 방문자 수가 각각 1,000만 명을 넘는 등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입법이유로 들고 있어 결국 포털이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이 있어 포털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경우 여론왜곡 등의 문제가 있어 신 언론중재법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 검토보고서.

5)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제16조 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기사제공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 제2항(제16조 제3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6)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조정법 제14조의 2(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관은 조정사건의 분리 병합을 명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를 준용하여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사건과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으로써 신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와 같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7) 오프라인 언론사가 설립한 언론사닷컴을 피신청인으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는 경우도 그 법원리는 포털을 상대방으로 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하에서 포털과 언론사닷컴을 통칭하여 편의상 뉴스서비스사업자라 한다.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기사제공언론사도 뉴스서비스 사업자와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었고 이 부분이 절차법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신 언론중재법상의 이 부분 규정은 민사소송법이나 언론중재법 제19조 제9항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조정법에도 없는 특유한 것이고 이에 관한 선례도 없어 상당 기간 동안 그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 민사소송법 소송고지와 비교

민사소송법 제84조⁹⁾ 내지 제86조는 소송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송고지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목적은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서 피고지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고지에 의하여 피고지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¹⁰⁾

민사소송법상 소송고지와 언론중재법상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통보의 공통점은 소송이나 정정보도 등 청구 시에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송이나 청구가 접수되어 절차가 개시된 연후에 고지나 통보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두 제도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고지의 주체는 법원이다. 즉,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고지를 신청할 수 있을 뿐 당사자 본인이 소송고지를 할 수 없다. 반면 언론중재법 상 통보는 뉴스서비스사업자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민사소송법상 고지는 당사자의 권한일 뿐 원칙적으로 의무 조항이 아니다.¹¹⁾ 그러나 언론중재법상 통보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다. 셋째, 민사소송법에 의한 고지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자에게는 기판력이 아니라 참가적 효력¹²⁾이 미칠 뿐이다. 언론중재법상 통보에 의하여 정정보도 등 사건에 관여하게 된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조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언론중재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고, 다만 기사제공언론사도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대부분의 경우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한 기사를 그대로 실는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

8)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나아가 언론중재법 제24조 제3항은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10)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1권 328쪽.

11) 민사집행법 제238조, 상법 제404조는 소송고지를 강제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고지는 강제되지 않는다.

12) 참가적 효력은 기판력이 아니고 피참가인(원래의 당사자)이 패소한 경우 소송고지를 받은 자와 원래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구속력을 말한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카2289 판결, 1979. 6. 12. 선고 79다 487 판결 참조.

면 조정이나 중재의 효력이 뉴스서비스사업자나 기사제공언론사에 동일하게 미친다고 보는, 즉 기사제공언론사에게도 조정결정의 당사자로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언론중재법의 입장이 아닌가 한다.

라. 뉴스서비스사업자가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에 정정보도 등이 청구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통보절차에 관한 문제와 또 통보가 없이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만 조정결정 등이 행해진 경우 그 결정의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효력이 문제가 된다.

우선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통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뉴스서비스사업자가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이나 중재부에서 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할 수단은 없다. 이 부분이 새로운 언론중재법 입법상의 실수가 아닌가 한다. 즉, 포털과 기사제공언론사의 관계 및 기사 내용의 동일성으로 인하여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신청인의 청구목적이 달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정정보도 등이 청구되면 자동적으로 기사제공언론사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였던 신 언론중재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조정절차에 대한 태도와 관계 없이 기사제공언론사를 조정절차에 끌어들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통보 여부를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중재부가 통보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결국 민사소송법상 소송고지제도를 유추하여 통보절차를 당사자인 피신청인에게 맡기기보다는 중재부에서 이를 행하도록 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언론중재법 하에서 뉴스서비스사업자가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중재부에서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권고를 하거나 당사자가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를 하면 접수단계에서 기사제공언론사도 공동 피신청인으로 할 것을 지도하거나 이미 뉴스서비스사업자만 피신청인으로 한 사건이 접수되었으면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새로운 신청을 하게 한 다음 민사조정법 제14조의 2를 준용하여 2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한 가지 해결책은 언론중재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조정법에 따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민사조정법 제16조는 제1항에서 “조정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사제공언론사가 어떤 경로로든지 자신이 제공한 기사에 관하여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

음을 안 때에는 중재부에 조정참가신청을 하고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사건에 관여할 수 있고,¹³⁾ 기사제공언론사가 스스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재부가 기사제공언론사를 조정절차 등에 참여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¹⁴⁾ 참여시켜 조정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민사조정법을 준용하여 기사제공언론사를 조정절차 등에 참여시키더라도 언론중재법상 뉴스서비스사업자의 통보에 의하여 부여되는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¹⁵⁾ 필자는 통보절차에 관한 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으로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으면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기사제공언론사는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신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의 통보가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고려하여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마.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에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조정결정 등의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효력

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통보 없이 신청인과 뉴스서비스사업자 사이에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기사제공언론사에게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에 정정청구 등이 있음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상 기사제공언론사를 정정청구 등의 당사자로 취급할 수 없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민사조정법의 준용에 의하여 기사제공언론사가 조정절차 등에 스스로 참가하여 조정결정에 기사제공언론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조정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이에 따라 의무를 부담함도 당연하다.

반면에 기사제공언론사가 뉴스서비스사업자로부터 통보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또는 중재부의 명령에 의하여 조정에 참가하지도 않아 기사제공언론사가 조정절차 심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신청인과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정결정에 기사제공언론사가 효력을 받는 것은 민사절차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신청인이 기사제공언론사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기사제공언론사는 제쳐 두고 뉴스서비스사업자만 상대방으로 하여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하였기 때문이므로 포털에 실린 기사가 정정되는 것으로 만족하든지 원천기사의 정정을 원하면 다시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

13) 민사조정법의 준용에 의하여 조정에 참가한 경우를 관여라고 한 것은 민사조정법의 표현과 같이 이러한 참가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하고 있어 정정보도 등 청구에 있어서도 당사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 기사제공언론사가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상당성”은 거의 인정될 것이다.

15) 그러나 조정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제공언론사와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절차법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조정결정의 효력을 받는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도 등의 청구를 하여 신청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통보 없이 신청인과 뉴스서비스사업자 사이에 조정이 확정되어 포털에 실린 기사의 정정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 원천기사와 포털에 실린 기사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민사절차상 불고불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그 모순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도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개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바.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에 통보를 한 경우 기사제공언론사의 언론중재 절차상 지위

위에서는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기사제공언론사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점을 보았는데 통보를 한 경우에도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뉴스서비스사업자가 통보를 한 경우 기사제공언론사도 피신청인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입법이 과연 현대 민사절차법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기사제공언론사는 놔두고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불만이 있어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피신청인으로 삼겠다는 정정보도 등 청구를 한 신청인이 아닌 피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기사제공언론사로 하여금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 과연 법원리에 합당한 것인지는 심히 의문이다. 이것은 신청인이 정정보도 등 청구 당시부터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를 모두 상대방으로 한 것과 뉴스서비스사업자만 상대방으로 한 것과 아무런 차이를 없게 하는데 과연 이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합당한 것인지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는 조항이다. 즉,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당사자를 추가하는¹⁶⁾ 것으로 국민에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신 언론중재법이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에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통보만 하면 기사제공언론사가 피신청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개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 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의하여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에 관한 통보가 있는 경우 심리에 참석하여야 할 자는 누구인가.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2항에서 기사제공언론사가 뉴스서비스사업자로부터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

16) 이것은 뒤에서 언급하는 해결책인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신청인에게 당사자 추가신청권을 부여하는 것과 어긋난다.

음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기사제공언론사도 신청인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둔 것에서 기사제공언론사는 비록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였지만 피신청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중재부의 심리에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 모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기일통지를 받고 2회 출석하지 아니한 뉴스서비스사업자나 기사제공언론사는 언론중재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도 좋을 것이다.

한쪽이 출석하고 다른 쪽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석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수용한 경우 피신청인들에 대한 조정결정이 모순이 없지만 출석한 피신청인과 사이에 당초의 청구와 다르게 조정이 이루어지고 양자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예컨대, 불출석한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애초의 청구취지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이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출석한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는 절대로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반론보도만으로 조정이 된 경우일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양 피신청인에 대하여 필수적 공동 피신청인으로 보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정결정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다른 절차를 통하여 불일치를 해결하여야 하고 결국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가야 할 것이다.

아. 입법론적 검토 : 민사소송법상 필수적 공동소송¹⁷⁾과의 비교 및 도입 검토¹⁸⁾

신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가 도입된 것은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한 원천기사와 포털에 실린 기사는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하나의 절차에서 교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불고불리의 원칙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상대방으로 한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고 이에 대해서만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정결정 등이 있는 경우 포털에서 정정된 기사와 원천기사 사이에 모순점이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신 언론중재법은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통보를 받은 기사제공언론사 역시 피신청인의 지위에 두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신 언론중재법이 기사제공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단순히 피신청인의 지위에 두도록 하는 것

17)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소송의 공동이 법률상 강제되고 또 共同訴訟人 모두에게 合一確定의 필요가 있는 공동소송을 말한다. 법원 실무제요 민사소송 1권 284쪽.

18) 이 부분이 이번 글에서 필자가 가장 고심한 테마이다. 즉, 신청인으로서 뉴스서비스사업자나 기사제공언론사만 피신청인으로 하고 싶은데 법에서 양쪽 다 피신청인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서 필수적 공동소송 제도를 두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를 언론중재법에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에 불과하고 조정결정 등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더라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즉, 통상의 공동소송인의 지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신 언론중재법이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정정보도 등 청구만 하여도 기사제공언론사를 피신청인으로 되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를 민사소송법상 필수적(적어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로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¹⁹⁾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각 가지 민사절차법상의 문제점이 일거에 해결된다(다만, 여기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둔다고 하여 각자에 대한 조정결정 내용이 완전하게 같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조정결정의 전체적인 취지가 같다면 피신청인들의 기사 게재 방식 차이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언론중재법에서 포털에 실린 기사와 원천기사는 항상 동일하게 취급됨을 선언하고 (이러한 선언은 현실과도 부합된다. 신청인의 신청목적은 포털에 실린 기사는 물론 원천기사도 동일하게 정정되어야 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가 필수적으로 공동피신청인 관계에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 절차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될 것이다.

중재부는 신청인이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상대방으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를 하는 경우 접수 시 기사제공언론사도 동시에 피신청인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됨을 알려주어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피신청인으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업무착오 등으로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는 경우 조정절차가 진행 중에 중재부는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중재부에 피신청인의 추가를 요청하게 하고 중재부는 결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게 한다(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본문). 만일 신청인이 이와 같은 중재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사제공언론사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지 않으면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사건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어떻게 보면 앞에서 필자가 지적하듯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신 언론중재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고, 피신청인을 다수로 한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면이 적다는 점에서(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다수가 되

19) 2008년도 중재위원 워크숍에서 조수정 전 위원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는 것은 법적 성질에 반하므로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본다면 극단적으로 말하여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조정결론과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조정결론이 정반대로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신 언론중재법이 원래 추구하였던 입법 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된다. 그리고 법적 성질에 반한다는 것은 아마 민사소송법의 법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학설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범위를 소송상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설도 있다고 한다.(강현중 저 민사소송법 제5판 197쪽 참조) 오히려 포털의 기사와 원천 기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언론중재법의 목적이고 또 자연스런 것임을 감안하면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지위를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지만 언론중재에서는 이런 면도 없다.)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우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원고(언론중재법상의 신청인)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누누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재판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면에서도 신 언론중재법이 기사제공언론사에 필수적 공동소송인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피신청인에게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비록 조문상으로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자 추가에 관하여는 권한도 된다)을 부여한 것은 법체계상으로 크나큰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필수적 공동 당사자가 되는 경우 조정결정의 효력이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에 동일하게 미침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자. 기사제공언론사만 상대방으로 한 정정보도 등이 청구되었을 경우

위에서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상대방으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을 경우만을 언급하였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법적 문제를 보기로 하자.

언론중재법은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를 추측하여 보면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기사제공언론사와 뉴스서비스사업자 사이의 기사제공 계약²⁰⁾상 당연히 포털에 실린 기사의 정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을 통한 해결책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언론중재법에 해결책이 규정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²¹⁾

그 해결책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등이 청구되었을 경우와 동일하게 기사제공언론사만 상대방으로 한 정정보도 등이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청인으로 하여금 중재부에 뉴스서비스사업자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요청하게 하고 중재부의 허가에 의하여 뉴스서비스사업자도 피신청인으로 삼는 방법이 가장 간명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20) 필자가 그 계약서를 구하여 보려고 공적, 사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추측에 의한 글을 써 안타깝다.

21)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절실히 요구된다. 비록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와 맺은 계약에 원천기사에 정정보도 등을 명하는 조정결정 등이 있으면 이에 따라 포털에 실린 기사도 정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이는 기사제공언론사와 사이의 계약위반, 즉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기사제공언론사가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직접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뉴스서비스사업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정정보도 등 신청이 절실하다.

3.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실체법상 지위

가.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의 의무

언론중재법은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 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이하 알림표시라고 한다)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기사제공언론사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것은 조정결정 등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²²⁾에 유사한 제도로 보인다. 원래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상을 동결함에 그치지 않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형성된 것과 같은 현상을 작출하게 되므로 그 심리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치고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소명(疎明)²³⁾을 요하는 데 반하여 신 언론중재법 상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치는 민사집행법상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의하여 형성되는 정도의 현상변경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의 청구만으로 심리나 소명 없이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에서 본 의무를 명하고 있는데서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notice and take down”²⁴⁾ 의무까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각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²⁵⁾(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와 유사한 개념이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

22)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 4권 8쪽.

23) 소명은 증명보다는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입증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한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 4권 75쪽.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

은 자(언론중재법상 신청인에 해당한다)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등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명하고 있는데 그쳐 언론중재법의 규정만을 놓고 볼 때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take down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take down을 명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로 정하고 또한 침해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통상의 정정보도 등 청구보다 법익의 침해가 당사자에게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삭제의무까지 두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 상의 피해구제 절차에서는 일률적으로 삭제의무를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중 그 보도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면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등 청구로 갈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기사의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아무리 언론보도로 사생활 침해 등을 입었다 하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삭제 등을 구할 수 없고 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해당 기사에 표시하는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기사를 삭제하는 수도 있으나 이는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닌 당사자 간의 임의적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

나아가 사생활 침해 등이 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고자 정정보도 등 청구를 하였는데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스스로 그 기사를 내렸을 경우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등의 청구가 있고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그 기사를 삭제하였을 경우 그 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이 병합청구되었을 경우에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스스로 그 기사를 내렸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가 피신청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정정보도 등 담당 재판부가 이러한

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업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영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사실을 이유로 신청인을 설득하여 손해배상을 포기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는 비법률적인 사항이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

나.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었음을 표시하는 의무의 구체적 내용

(1) 뉴스서비스사업자가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신청인으로부터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고도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언론중재법에서 아무런 벌칙 규정이나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과연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앞서 지적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삭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고 다만 제44조의 2 제6항에서 삭제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법원에 부여하여 소극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 체제를 보면 결국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의 알리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자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중재부로서는 심리결과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으로 사실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피해 회복 등이 시급하다면 이에 대한 벌칙을 두거나 과태료 부과 조항을 두는 것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 이행을 강제할 법률적인 수단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알리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언론중재법이 준용하는 민사조정법 제21조²⁶⁾, 제42조²⁷⁾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물론 민사조정법 제21조는 알리표시 의무의

26) 민사조정법 제21조 (조정 전의 처분)

①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 전의 처분으로서 상대방 기타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현장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기타 조정의 내용이 되는 사항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배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함에는 처분위반에 대한 제42조의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는다.

27) 민사조정법 제42조(조정전의 처분위반자에 대한 제재)

이행과 같이 적극적인 행위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조정의 내용이 되는 사항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배제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주로 소극적인 금지만 정하고 있어 과연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조정실무는 민사조정법의 위 규정을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어²⁸⁾ 이를 유추하여 보면 중재부는 피신청인인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알립표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사전처분으로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민사조정법은 중재부가 이러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조정신청 후 그 종료전, 즉 조정 사건이 계속 중에만 인정하고, 일반 보전처분과 달리 조정신청 전에는 명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청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신청 없이 조정기관이 직권으로 발령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재부가 이와 같은 사전처분을 명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인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과태료처분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²⁹⁾ 비록 언론중재법이 민사조정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벌칙조항까지 준용한다는 것은 광의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소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3) 알립 표시의무의 이행방법이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일임되어 있는지 여부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해당 기사에 표시하는 알립표시 의무의 방법이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일임되어 있는지 의문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알립표시를 일반인이 거의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행한 경우에도 그 의무 이행을 다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중재부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아니면 중재부에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줄 권한이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언론중재법은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언론중재법이 준용하는 민사조정법의 사전처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재부는 알립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

①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전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과태료의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2.11.30

28) 실무제요 조정실무 89쪽.

29) 대법원 2007.3.29. 자 2006마724 결정

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大)는 소(小)를 포함한다는 원칙을 원용하여 그 의무이행의 내용까지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재부는 신청인이 알림표시에 관한 신청을 할 때 동시에 그 방법에 관하여도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 의견과 중재부의 견해를 토대로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이 일반인에게 제대로 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알림표시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알림표시에 의한 뉴스서비스사업자의 피해와 구제

정당한 기사에 대하여 알림표시가 행하여짐으로써 뉴스서비스사업자는 포털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발생 가능성은 모든 분쟁구제 절차에서 항상 존재하는 것이므로 특히 정정보도 등 사건에서 특유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알림표시가 그 기사를 단정적으로 허위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로 행하여지는 것을 알림표시에 부가하여 알림표시 옆에 “이 기사에 대하여 …로부터 정정보도 청구 등 신청이 제기되어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이를 알립니다. 그러나 이는 이 기사에 확정적인 오류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고 언론중재위의 조정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임시적인 조치입니다.”는 정도의 문구를 부가하여 두면 뉴스서비스사업자의 피해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신청인의 신청이 오로지 뉴스서비스사업자를 괴롭힐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즉,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조정결정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후에 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의한 피해구제는 별론으로 하고 사전조치로 인하여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손해를 볼 경우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알림표시의 존재 의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다.

(5) 오프라인 매체와의 형평성

현재 오프라인 매체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과 같은 알림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동일한 정정보도 등 청구 사건에서 유독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알림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오프라인 매체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매체의 특성상의 차이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오프라인 매체는 시간적 지속성이 결여되어 시간이 지난 보도에 소급하여 알림표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정정보도 등 본안에 관한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뿐이다(기술적으로도 이미 지나간 기사에 알림표시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 매체는 그 매체에 기사가 실린 후 이를 인위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을 경우 알림표시를 하여야 오보 등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의 위 조항은 그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 뉴스페이지를 별도로 두지 않은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책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인 네이버나 다음은 별도의 뉴스 공간을 만들어 뉴스제목을 열거하고 있고 사이트 이용자가 게시된 뉴스 중 원하는 제목을 클릭하면 바로 그 뉴스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뉴스페이지를 별도로 두지 않고 검색란에 관심 있는 항목을 기재하고 클릭하면 기사제공 언론사 홈페이지의 해당 뉴스에 바로 링크되어 비로소 뉴스가 제공되는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있을 수 있는데³⁰⁾ 이러한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 청구를 받았을 경우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의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어떻게 표시하여야 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 관하여 언론중재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필자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즉, 뉴스서비스사업자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뉴스가 저장되어 있다면 별도의 뉴스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뉴스서비스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의 해당 뉴스에 알림표시를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기사제공언론사의 해당 뉴스에 연결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하다면 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는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기사제공언론사에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이후 당해 기사제공언론사가 해당 기사에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기사를 내리는 것은 언론중재법의 규율대상이 아니어서³¹⁾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라. 여론 -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약간의 고찰

우리 언론중재법은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기사제공언론사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정정보도 등 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이지 다른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있어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도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때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기사제공언론사와 뉴스서비스사업자의 계약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한 기사를 가감 없이 게재하여야 하는데 기사작성에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뉴

30) 필자가 인터넷 포털을 다수 방문하여 봤으나 이러한 곳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포털이 있음을 가정하고 논의하기로 한다.

31)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은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알림표시 의무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스서비스사업자가 그 기사의 오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물론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하면 잘못된 기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제공에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따로 묻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무과실책임주의를 기사제공언론사에 적용하는 것은 기사제공언론사가 기사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또 그 기사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 등에 비추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단순히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를 옮겨 신는데 불과한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같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필자는 여기에서 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가 허위 또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기사를 게재하였을 때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어떤가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는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게 동일한 책임을 지고 그들 사이의 책임분담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문제로 해결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작금의 증대한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에 비추어 보면 수긍되는 면도 있다. 그러나 근대 민법의 자기책임원칙이나 과실책임원칙에 의하여 자신의 잘못에 비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 문제에 관하여 입법적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면 중재부에서 손해배상을 처리할 때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고의, 과실 개입 여부, 양자 사이의 계약관계 등 제반 사정을 따져 책임범위를 달리하도록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4. 결 어

신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에 관하여 참고 문헌이나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필자의 미약한 법률지식과 그 동안의 재판경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다. 쓰고 보니 너무 엉성한 점이 많아 언론중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든다. 그러나 이 글을 계기로 위 조문에 대한 논의가 더 진행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라는 의미에서 용감하게 썼다. 결국, 신 언론중재법의 이 조문은 좀 더 연구가 행하여져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